서식 9 공사장 이행사항 안내문(예시)

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행사항 안내

2019.2.15일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

비상저감조치 란?

-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수준이상 발생이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
  ※ 관련근거 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2019.2.15. 시행)

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은?

√ 초미세먼지 발생이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킬 때 발령됩니다

① 당일 0~16시 평균 50㎍/㎥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㎍/㎥ 초과 예상
② 당일 0~16시 주의보(75㎍/㎥ 이상 2시간)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㎍/㎥ 초과 예상
③ 내일 24시간 평균 75㎍/㎥ 초과 예상

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사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?

√ 일정규모 이상 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공사시간을 단축(공공) 또는 조정(민간)해야 합니다

시 행 일 : 2019. 2. 15일부터

공통 조치사항

○ 공사 시간 단축(공공 공사장) 또는 조정(민간 공사장) - 의무사항

(예시) 평상시 07시 ~ 16시(점심시간 제외, 8시간) 조업하는 공사장의 경우
- **단축** : 시행일 11~16시 조업(4시간 조업) → 단축 4시간은 저농도시 추가작업
- **조정** : 시행일 09~18시 조업(8시간 조업) → 출근시간대 회피하여 작업

※ 공사시간 단축·조정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터파기,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중인 공사장에 한정(건축물 축조·해체, 토목,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)

○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(예 : 일 1→3회)
○ 실내작업 우선 실시
○ 노후 건설기계 운영 금지 (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)

공정별 조치사항

공 정	억제시설 설치	조치할 사항
야 적	방음방진벽	·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
싣기 및 내리기	분무식 집진시설 설치	·살수량 증대
수 송	적재함을 밀폐 덮개 설치	·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(예 : 일 1→3회) ·덤프트럭 덮개 밀폐화 ·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 감소 ·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

※ 공사장별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관리카드 작성 후 관할 구청(환경 관련 부서)에 제출

자세한 문의사항은 ○○구청 ○○과(☎1234-5678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19 년 월 일

서울특별시 ○○구청장